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· 관리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문홍열

##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강현삼 의원 외 6명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4년 12월 1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12월 2일

3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위원 위촉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재난관리기금의 관리사항 변경(안 제3조)

나.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 근거조항 변경(안 제5조)

다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위촉요건 규정(안 제8조)

라. 기타 용어정비 등(안 제7조, 제8조의2, 제10조의2)

## 5. 검토내용

### 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제1조(목적), 제3조(기금의 관리), 제5조(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등) 등 변경된 조항번호와 일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명문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
- 개정안의 조문 내용은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 6. 검토의견

「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